

持株會社規制의 재검토 : 일본에서의 改正論을 중심으로

金 建 植*

I. 序 說

우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獨禁法)은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持株會社의 이용을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다(8조 1항): “누구든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하 持株會社라 한다)를 설립할 수 없으며 이미 설립된 회사는 국내에서 지주회사로 전환하여서는 아니된다.” 독금법상 이용이 금지되는 것은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 즉 이른바 純粹持株會社에 한한다. 따라서 달리 주된 사업활동을 영위하면서 소규모의 子會社를 운영하는 이른바 事業持株會社는 금지대상이 아니다. 이 규정은 일본의 獨禁法⁽¹⁾ 9조를 모방한 것으로서 다른 나라에서는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

최근 일본에서는 9조를 개정하여 순수지주회사를 적어도 부분적으로라도 解禁하자는 주장이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다. 그와 동시에 학계와 실무계에서도 純粹持株會社에 관한 논의가 여러 측면에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거의 동일한 내용⁽²⁾의 규정을 두고 있는 우리에게 특히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글은 이러한 일본에서의 논의를 소개하고 그 과정에서 부각된 논점을 검토함으로써 시사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논의의 전개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일본의 현행지주회사규제의 개요를 간단히 살펴본다(II). 이어서 본격적인 純粹持株會社解禁論의 이론적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通産省報告書의 내용을 차례로 소개하고, 검토를 가하기로 한다(III). 순수지주회사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회사법, 증권거래법, 세법 등 법률적인 문제가 보다 중요하게 부각된다. IV에서는 이러한 법적문제들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기로 한다.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1) 정식 명칭은 “私的獨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關する法律.”

(2) 우리 법은 8조 2항에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에 비하여 일본법은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II. 일본의 持株會社規制

1. 純粹持株會社の 금지

독금법⁽³⁾ 9조는 우리 법과 마찬가지로 지주회사의 설립이나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제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持株會社란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다른 회사의 사업활동을 지배·관리하는 회사를 말한다.⁽⁴⁾ 지주회사는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것 말고도 독자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순수지주회사와 사업지주회사의 두가지로 나뉜다. 9조는 이 두가지중 순수지주회사, 9조의 표현을 빌면 “株式⁽⁵⁾을 소유함으로써 국내의 회사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만을 금지하고 있다.

2. 순수지주회사의 범위

9조가 금지하는 것은 순수지주회사만이므로 그 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순수지주회사의 범위에 관하여 일본의 공정거래위원회⁽⁶⁾는 가이드라인⁽⁷⁾을 공표한 바 있다. 그에 의하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이라는 문구의 해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회사는 원칙적으로 벤처캐피탈의 被支配會社라고 하고 있다.⁽⁸⁾

(1) 주식소유비율(발행주식총수에서 벤처캐피탈사가 소유하는 주식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넘는 회사.

(2) 주식소유비율이 25%-50%인 회사로서 다른 출자자와의 관계에서 지배가능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지 않은 회사.

(3) 주식소유비율이 10%-25%인 회사로서 다른 출자자와의 관계에서 지배가능한 것이 명백한 회사.

주식소유비율이 10%이하인 회사는 원칙적으로 벤처캐피탈의 피지배회사가 아닌 것으로 본다.

9조에 의해서 금지되는 순수지주회사에 해당하는 것은 다른 회사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지주회사에 한한다. 가이드라인은 “주된 사업”인지 여부를 가리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회사가 보유하는 피지배회사주식의 가액의 합

(3) 이하 특별히 달리 표시하지 않는 한 일본법을 가리킨다.

(4) 根岸 哲, “持株會社と獨占禁止法,” (資本市場研究會, 持株會社の法的諸問題(1995)) 2면.

(5) 우리 법과는 달리 社員의 持分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6) 일본어명칭은 公正取引委員會이다.

(7) 정식명칭은 “ベンチャー・キャピタルに對する獨占禁止法第9條の規定の運用についての考え方.”

(8) 내용의 소개는 舟橋和幸, “獨占禁止法における持株會社禁止制度のあり方,” 商事法務 1413호 13면 (1996)에 의한 것임.

계가 총자산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에 해당한다. 25%에서 50%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한 우려가 있지만 25%이하인 경우에는 주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기준은 벤처캐피탈에 대한 것이지만 실무상으로는 일반적인 경우에도 활용되고 있다. 주된 사업인지의 여부는 당해회사의 정관에 기재된 목적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자산에서 차지하는 소유주식의 가액의 비율, 당해회사의 수익의 원천, 지주비율, 임원의 과견, 임원의 선임방법, 주식소유와 당해회사의 사업활동과의 관계, 주식소유와 타사지배의 관계 등을 당해회사의 실제의 활동상황으로부터 종합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⁹⁾

9조의 규정은 지주회사의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따라서 아무리 대규모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라도 달리 사업활동에 종사하고 그 사업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사업 지주회사로서 허용된다. 반면에 소규모의 지주회사라도 달리 사업활동이 없다면 순수지주회사로서 금지된다.

3. 純粹持株會社禁止의 배경

순수지주회사를 금지하는 9조는 2차대전 직후인 1947년에 과거 일본경제를 지배하던 財閥의 대두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戰前의 재벌은 무수한 회사를 거느리며 일본경제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이러한 재벌의 중추에 해당하는 本社は 바로 지주회사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戰後 일본에 들어선 美軍政當局은 재벌이 군부, 관료와 유착함으로써 민주사회의 형성을 방해한 것이 일본을 전쟁으로까지 몰고간 주요원인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대대적인 재벌해체작업을 단행하는 한편 해체된 재벌의 부활을 막기 위하여 9조를 도입한 것이다.

4. 관련규정

독금법상 지주회사를 제한하는 기능을 하는 것은 9조만이 아니다. 1947년의 독금법은 회사가 지주회사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 자체까지도 엄격히 제한하였다. 먼저 10조는 금융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事業會社가 다른 회사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다. 또한 11조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경쟁관계에 있는 同種의 金融會社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함과 동시에 다른 회사의 주식총수의 5%를 넘는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이는 금융회사가 실질적인 의미에서 지주회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1949년의 개정으로 10조는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던 태도를 버리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한하여 예외적으로 금지하게 되었다.

(9) 根岸, 주(4), 2면.

- (1) 회사간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게 되는 경우
- (2)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되는 경우
- (3) 불공정한 경쟁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 (4) 금융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10조는 1953년에 다시 개정되어 예외적으로 금지되는 경우가 위의 (2)와 (3)의 경우로 축소되었다. 또한 11조도 개정되어 금융회사가 경쟁금융회사주식을 소유하는 것이 허용되었으며 다른 회사주식의 보유한도도 10%로 인상되었다. 이처럼 10조가 변천한 것은 독점법의 중점이 經濟力集中規制에서 競爭制限規制쪽으로 이동하게 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¹⁰⁾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업집단화는 계속되었다. 그에 따라 1977년에는 대규모사업회사가 사실상의 지주회사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식취득·소유의 총액제한규정(9-2조)이 도입되었다. 또한 금융회사의 타회사주식보유한도도 다시 5%로 인하되었다.

5. 純粹持株會社解禁論의 대두

이처럼 독특한 내용의 지주회사금지제도에 대해서는 개정론이 일찍부터 제기되었으나⁽¹¹⁾ 폭넓은 지지를 받지 못하여 실현될 수 없었다. 이러한 개정론은 최근 일반적인 규제완화의 대세에 힘입어 다시 등장하였다. 개정론은 기업재편을 촉진하는 수단으로서 필요하다는 업계의 주장이 대두되고, 금융제도개혁과 관련한 금융지주회사의 허용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광범한 지지를 얻고 있다. 이 문제의 논의는 1995년 2월 통산성의 企業法制硏究會報告書(통산성보고서)가 지주회사의 解禁을 정면으로 요구하면서 본격화되었다.⁽¹²⁾ 이어서 1995년 3월에는 內閣이 결정한 규제완화추진계획의 일부로 포섭되기에 이르렀다. 종래 해금론에 반대해 오던 공정거래위원회도 마침내 1995년말에는 지주회사의 부분적인 해금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¹³⁾ 이러한 部分解禁案에 대해서는 경제계뿐 아니라 집권여당인 自民黨에서도 비판적인 시각이 강하여 부분해금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아예 전면적으로 해금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공정거래위원회도 다시 한걸음 물러서서 지주회사를 원칙적으로 자유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막판에 이르러 연립내각에 자민당의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는 사회당이 지주회사해금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강력히 표명함에 따라 사태가 반전

(10) 根岸, 주(4), 4면.

(11) 이에 관한 간단한 소개에 대해서는 通産省 産業政策局(編), 企業組織の新潮流 (1995)(이하 “통산성”으로 인용), 79-81면 참조.

(12) 이미 1993년 6월 통산성의 산업구조심의회기본문제소위원회 중간보고서에서 순수지주회사의 해금이 주장된 바 있다.

(13) 1995년 12월 27일에 나온 독점금지법제4장개정문제연구회의 중간보고서 “持株會社禁止制度の在り方について”.

되었다. 그리하여 타협책으로 이 문제를 당장의 개정법단에서는 제외하고 차후의 추진과제로 삼기로 하였다. 따라서 빠르면 1996년내에라도 실현될 것 같았던 지주회사규제완화는 연기되게 되었고 앞으로도 그 실현이 반드시 확실한 것은 아니다.

III. 通産省報告書의 개요

1. 총설

9조의 지주회사규제는 1조의 목적조항에서 들고 있는 “事業支配力の 과도한 집중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지배력의 과도한 집중”이 주로 一般集中을 가리킨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학설중에는 9조의 목적에 일반집중방지만이 아니라 특정시장에서의 경쟁제한규제도 포함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¹⁴⁾ 그러나 뒤에 보는 바와 같이 지주회사구조에서 생겨나는 이러한 경쟁제한효과도 일반집중의 효과에 속하는 것으로 설명한다면 실제로 큰 차이는 없다.

순수지주회사의 허용여부와 관련해서는 다음 3가지의 물음에 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 純粹持株會社금지의 논거인 일반집중은 과연 어떠한 폐해를 낳는가; (2) 純粹持株會社를 허용하면 과연 이러한 일반집중이 촉진될 것인가; (3) 純粹持株會社를 허용하면 어떠한 효용이 있는가. 이 세가지 문제는 지주회사규제를 검토함에 있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아니되는 근본적인 문제이다. 통산성보고서는 이 세가지 문제중 주로 (1)과 (3)을 중심으로 논하고 있다. (2)에 대해서는 간단히 언급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일본에서의 논의에서 출발점이 되고 있는 통산성보고서의 주된 내용을 차례로 소개한다.

2. 一般集中의 폐해

통산성보고서는 일반집중의 폐해로 지적되는 것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¹⁵⁾

(1) 정치적 폐해

경제력이 소수의 기업에 집중하게 되면 이들의 영향력이 정치과정에게까지 미치게 되어 민주정치 자체가 위기에 빠진다.

(2) 사업력격차의 발생 (대규모기업의 성립)

가. 경쟁제한

대규모기업과 중소기업사이에는 규모의 격차때문에 대등한 경쟁이 불가능하므로 중소기업이 몰락하여 경쟁이 줄어들게 된다.

(14) 根岸, 주(4), 4면.

(15) 통산성, 주(11), 15-16면.

나. 不當廉賣

소규모경쟁기업을 부당염매에 의하여 괴멸시킬 수 있다.

(3) 기업집단화, 기업계열화의 폐해

가. 互惠去來

동일한 집단에 속하는 기업끼리 상호거래를 통해서 경쟁기업의 거래기회를 박탈하거나 차별적으로 대우할 수 있다.

나. 장기계속적 거래

동일한 집단구성기업끼리의 장기적인 거래를 통해서 국내시장이 보다 폐쇄적이고 불투명하게 될 수 있다.

3. 폐해우려에 대한 反論

일반집중의 폐해에 관한 이상의 우려에 대해서 통산성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¹⁶⁾

(1) 정치적 폐해

현재와 같이 시장이 국제화되고 있는 오늘날 한 국가내에서 경제력집중의 효과는 희박해지고 있으므로 대기업이 반드시 정치적으로 유리한 결정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대기업의 정치적 영향력이 문제된다면 정치자금에 대한 규제로 해결하는 것이 정도일 것이다.

(2) 사업력격차의 발생

가. 경쟁제한

사업력격차는 대규모기업의 규모의 경제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자체가 경쟁제한행위는 아니다. 경제력집중의 결과 사업기회가 감소하여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이 줄어들다는 사실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효율이 나쁜 기업이 도태하고 결과적으로 효율이 좋은 기업이 남는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없다.

나. 不當廉賣

부당염매로 이익을 올릴 수 있으려면 부당염매로 경쟁기업을 도태시킨 후에 가격인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덤핑으로 인한 손실을 초과해야 한다. 그러나 가격인상은 신규참입을 불러오기 때문에 실제로는 손실을 벌충하기 어렵다. 또한 부당염매에 대해서는 독금법상의 규제가 있으므로 만약 그 규제가 미흡하다면 그것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16) 자세한 것은 통산성, 주(11), 23-28면.

(3) 기업집단화, 기업계열화의 폐해

가. 互惠去來

호혜거래를 하게 되면 효율적인 기업과의 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련기업 스스로도 타격을 입는다. 호혜거래는 경쟁기업이 용이하게 다른 거래처를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만 실효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개방경제하에서 국제경쟁에 처한 기업으로서 호혜거래로 인한 경쟁제한은 특수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경쟁격화로 인하여 비효율적인 거래를 하기는 어려우며 실제로도 계열외거래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예외적으로 경쟁제한적인 거래가 행해지는 경우에는 독금법의 규제가 적용될 것이다.⁽¹⁷⁾

나. 기업집단화

純粹持株會社를 허용한다 해서 이제까지 상당한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던 기존의 舊財閥系企業集團의 구성원들이 純粹持株會社의 형태로 결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4) 경제력의 과도한 집중의 구체적 의미

애당초 경제력의 과도한 집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분명치 않고 무엇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집중이 생기면 폐해가 생기는가가 명확치 않다.

(5) 현행의 법제 및 운용상의 모순

가. 純粹持株會社에 특유한 문제가 아니라 反論

純粹持株會社에 대해서 소액의 자본으로 대규모기업군을 지배할 수 있는 형태라는 점, 대등한 회사간의 결합이 용이하게 되기 때문에 기업결합이 과도하게 확대된다는 점 등의 비판이 있다. 그러나 前者에 대해서는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음으로써 생기는 현상이라는 反論이, 後者에 대해서는 사업지주회사에도 공통하는 사항이라는 反論이 존재한다.

나. 합병과의 불균형

합병에 관해서는 사전신고만을 요구할 뿐 금지하지 않는 데 반하여 합병의 대체수단이 라고 할 수 있는 純粹持株會社의 경우에는 합병에 비하여 결합도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전면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다. 외국기업의 예외

운용상 외국기업은 일본내에 1개의 자회사만을 갖는 것이라면 純粹持株會社도 허용하고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과도한 경제력집중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는 점, 외국기업의 사업활동에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참작한 것이다. 이러한 실질적인 판단은 9조의 형식적예방주의에 무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7) 이 점은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금지에 관한 독금법 19조 및 유통거래가이드라인 제1부 제5 (부당한 相互去來) 등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다.

(6) 일반집중규제에 관한 비판

끝으로 통산성보고서는 일반집중규제에 관하여 근본적인 의문을 표시하고 있는 바 그것을 요약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¹⁸⁾

“사업지배력의 과도한 집중의 방지”는 경제민주주의의 이념을 표시한 것으로서 그 이념은 오늘날도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戰前과는 달리 정치경제의 모든 제도가 민주적으로 정착된 오늘날 독금법이 구체적으로 규제할 것은 기본적으로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의 실질적인 제한이다. 현행독금법의 일반집중규제의 필요성, 합리성은 충분히 설명내지 논증된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일반집중규제를 논거로 하는 지주회사규제는 설득력있는 새로운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폐지를 포함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경제력의 과도한 집중에 대해서는 오늘날도 국민의 불안이 있다는 지적도 있으므로 純粹持株會社規制의 불합리성이 명백하다 하더라도 전면폐지를 서두르기보다는 상세한 검토를 행하여 국민을 안심시키는 형태로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가 시급히 정식으로 검토에 착수해야할 것이다.

4. 純粹持株會社の 경제적 효용

(1) 경제적 효용

통산성보고서가 위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純粹持株會社가 별다른 폐해를 낳지 않는다 하더라도 純粹持株會社가 별다른 효용을 갖지 않는다면 그 해금론은 설득력을 갖기 어려울 것이다. 통산성보고서는 純粹持株會社가 여러가지로 경제적 효용을 지닌다고 하며 그것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¹⁹⁾

가. 多角化, 多國籍化에 대응한 효율적인 기업조직의 실현과 원활한 인사, 노무관리의 실현 (신규사업전개 및 리스트럭처링의 촉진)

(가) 전략적경영과 사업경영의 분리

다양한 업종이나 복수의 지역거점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경우 각 업종이나 사업거점별로 분사화함으로써 그룹의 본사와 사업부문의 경영을 분리할 수 있다. 이러한 분리는 本社와 子會社 양자에 다음과 같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1) 本社

- 본사로서는 경영자가 일상적인 경영판단에서 벗어나 장기적시점에서 전략을 신속히 결정할 수 있다.
- 각 사업부문을 평등히 취급하여 그룹내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자원의 배분을 행할 수 있다.

(18) 이하의 내용은 통산성, 주(11), 27-28면을 요약한 것이다.

(19) 상세한 것은 통산성, 주(11), 31-37면 참조.

— 본사는 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배당만에 의존하게 되므로 자회사의 경영효율화를 보다 촉진하게 될 것이다.

— 자회사의 독립성이 강화됨에 따라 본사기능이 줄어들며, 비용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事業部門

— 각 사업부문마다 권한위임에 의하여 경영책임의 명확화가 가능하며 그 평가도 명확하게 되어 각 사업부문의 활성화가 도모된다.

— 각 사업부문마다 당해분야에 정통한 경영자에 의한 합리적인 경영이 가능하게 된다.

— 각 사업부문이 독립한 기업이 됨으로써 다른 사업부문과 무조건 평등하게 취급될 필요가 없어지므로 유연한 경영이 가능하게 된다.

(나) 원활한 인사, 노무관리

— 分社化에 의하여 각 사업부문의 종업원의 책임이 명확해지고 이들이 임원으로 등용되기 때문에 사기가 높아지는 등 원활한 인사관리가 가능하다.

— 사업지주회사형태에서는 친자회사간에 계층의식 내지 우월의식이 발생하여 종업원의 사기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나 純粹持株會社 형태에서는 각 사업부문이 평등한 지위를 누리므로 그러한 우려가 없다.

— 각 사업부문마다 고용형태를 달리할 수 있다.

(다) 벤처사업 및 회사벤처의 진흥

— 앞서 설명한 1)과 2)의 장점으로 인하여 기존기업이 위험도가 높은 신규분야에 대담하게 뛰어드는 이른바 회사벤처활동이 촉진될 것이다.

— 벤처사업에 대한 장애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나. 國際的 法制度와의 조화

외국기업이 순수지주회사형태로 對日投資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 때문에 일본에 아시아지역을 통괄하는 순수지주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외국기업은 다른 나라로 갈 수 밖에 없다. 현재 행정개혁추진본부 규제완화검토위원회에서도 외자계기업의 대표로부터 대일직접투자확대를 위하여 순수지주회사를 해금하라는 요청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일부 다국적화하는 일본기업중에는 일본이외의 국가에서 순수지주회사형태로 본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 또한 일본기업중에는 해외에서 순수지주회사형태를 채택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순수지주회사를 허용함으로써 대일투자도 촉진하고 일본기업의 경영효율화도 달성하여야 할 것이다.

다. 조직, 인사면에서의 마찰을 회피한 기업결합

기업문화와 노무조건이 다른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에 합병으로는 인사, 조직의 일체화가 곤란하고 기업통합을 실현하는 데 지장이 크다. 그에 비하여 각각의 기업을 독립한 형

태로 통합하는 순수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합병에 수반되는 조직, 인사면에서의 마찰을 회피하면서도 합병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최종적으로는 합병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순수지주회사형태를 활용함으로써 합병에 이르기까지의 마찰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다. 순수지주회사는 합병보다 약한 형태의 기업결합임에도 불구하고 일률금지라는 합병규제 이상의 규제를 가함으로써 기업의 발본적인 리스트럭처링의 장애가 되고 있다. 순수지주회사는 리스트럭처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또 하나의 選擇肢가 될 수 있다.

라. 소비자이익의 증진 및 고용의 확대등

순수지주회사형태의 활용으로 인하여 신규사업진출 및 신제품의 개발이 촉진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기업활동이 활성화됨으로써 기업도 이익을 보겠지만 근로자는 고용기회의 증대 및 근로조건향상의 향상이라는 이익을 누릴 수 있고 소비자는 다양한 수요에 적합한 상품, 서비스를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2) 예상되는 반론

통산성보고서는 예상되는 반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²⁰⁾

가. 多角化, 多國籍化에 대응한 효율적인 기업조직의 실현과 원활한 인사, 노무관리의 실현 (신규사업전개 및 리스트럭처링의 촉진)

(가) 전략적경영과 사업경영의 분리

단일의 기업내에서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사화한 것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 이사를 전략담당과 사업담당으로 구분
- 각사업부문마다 독립채산제, 사내자본금제를 도입

(나) 원활한 인사, 노무관리

단일한 기업구조에서도 다음과 같은 방법을 택한다면 마찬가지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이사의 증원
- 사업지주회사형태를 취하여 고용형태, 노동조건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사업부문에 한하여 분사화.

나. 國際的法制制度와의 조화

- 純粹持株會社가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시장에 진출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는 외국기업이 없다.

- 純粹持株會社를 허용하면 외국기업의 비판대상이 되고 있는 집단내거래를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

다. 조직, 인사면에서의 마찰을 회피한 기업결합

- 純粹持株會社로 복수의 기업을 통합하더라도 인원합리화등 대담한 리스트럭처링을

(20) 통산성, 주(11), 37-39면.

실시하지 않으면 통합에 의한 경제효율의 향상은 기할 수 없다.

— 시장지배력의 강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3) 통산성의 재반론

이러한 반론은 대체로 純粹持株會社의 효용은 다른 방법으로도 달성할 수 있으며 반드시 純粹持株會社를 허용해야만 달성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내용이다. 즉 기업이 純粹持株會社 형태를 채용해서는 안된다는 적극적인 근거는 제시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純粹持株會社 형태를 취할 것인가는 국가가 판단하여 정할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선택에 맡겨야 할 것이다.

5. 純粹持株會社의 具體的 諸形態

통산성보고서는 純粹持株會社가 허용되는 경우에 기업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용할 것인가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전망하고 있다.⁽²¹⁾

(1) 分社化와 純粹持株會社

현재 기업에서는 “사내분사화,” “컴파니제,” 심지어는 社內資本金制까지 도입되어 사실상 순주지주회사와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러한 사업부문을 법적으로도 독립시킨 것이 순수지주회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로 순수지주회사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기업조직만이 변경될 뿐 기업집중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

(2) 純粹持株會社를 활용한 벤처사업의 창출

이 경우에도 일반집중의 문제는 전혀 생겨나지 않으며 오히려 신규사업이 창출됨에 따라 경쟁촉진효과가 발생한다.

(3) 純粹持株會社를 활용한 새로운 다각화, 다국적화

처음부터 순수지주회사의 형태로 출발할 수도 있지만 기존회사가 다각화와 다국적화의 진전에 따라 각사업부문을 자회사로 함으로써 순수지주회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순수지주회사가 다른 회사를 매수함으로써 그룹을 확대하는 것이다. 일반집중의 시각에서 문제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현상이라고 하겠다.

(4) 기업집단, 주식상호보유와 純粹持株會社

상호보유관계로 맺어져 있는 기업집단이 순수지주회사의 형태로 결합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독립한 각기업의 경영자가 이제까지 누려오던 경영의 독립성을 포기하고 순수지주회사의 형태로 결합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²²⁾

(5) 수평 또는 수직결합을 위한 純粹持株會社

(21) 통산성, 주(11), 40-47면.

(22) 또한 통산성보고서는 순수지주회사를 안정주주대책으로서 이용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통산성, 주(11), 43면. 그러나 과연 실제로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극히 의문이다.

합병의 대체물로서 순수지주회사가 이용될 수 있다.

(6) 규제산업과 純粹持株會社

금융, 공익사업 등 많은 규제산업에서 사업회사는 다른 지역이나 다른 사업에 진출하는 것을 제한받고 있다. 순수지주회사가 해금되는 경우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주회사를 이용해서 금지되는 업무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 그 경우 타지역이나 타업무의 비용이나 위험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각 규제사업법으로 해결해야지 순수지주회사를 금지함으로써 해결해서는 아니된다.

(7) 가족지배를 위한 純粹持株會社

순수지주회사는 기업의 창립자 일족의 주식을 일괄하여 보유하기에 편리한 형태이다. 창립자소유주식을 보유하는 회사를 지주회사로 설립하고 상속인들은 지주회사주식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상속의 부담을 경감시키면서도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상속세제를 정비함으로써 해결할 문제이다.

6. 통산성보고서에 대한 評價

(1) 서설

통산성보고서의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가. 순수지주회사를 금지하는 근거가 되는 일반집중이 오늘날 실제로 그다지 심각한 폐해를 낳는 것은 아니다.

나. 순수지주회사를 허용한다고 해도 일반집중이 심화되는 것은 아니다.

다. 순수지주회사를 허용함으로써 여러가지 경제적인 효용을 낳을 수 있다.

이들 3개의 명제에 대해서는 보고서도 인정하고 있다시피 모두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들 명제를 우리 현실의 관점에서 차례로 검토하기로 한다.

(2) 일반집중의 폐해

일반집중의 폐해로 통상 지적되는 것들은 경쟁제한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의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前者를 살펴보자. 일반집중이 심화되면 不當廉賣나 互惠去來같은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구체적인 폐해에 대해서는 이미 개별적으로 별도의 규제가 존재한다. 만약 일반집중이 심화된 상황에서는 그러한 개별적인 규제가 실효를 발할 수 없다면 일반집중 자체를 규제해야 할런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개별적인 폐해에 대한 규제가 어느 정도나 실효를 거둘 수 있는지는 실증적인 검토를 거쳐야만 답할 수 있는 문제이다. 아직 이 문제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사실 일반국민이 일반집중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더 우려하는 것은 어쩌면 정치적인 폐해일지도 모른다. 국가의 富가 소수의 대기업에 집중하게 되면 모든 국민의 평등을 전제로 하는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의 주요한 의사결정과정에서

그러한 소수의 집단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이 정치영역에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²³⁾ 필요하다면 그 규제를 더욱 강화할 수도 있다. 이러한 규제가 어느 정도나 실효성을 발휘할 것인가도 역시 실증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어차피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과학적인 근거보다는 일반국민의 감정적, 심리적인 반응이 보다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이 정치적인 결정으로 일반집중을 억제하고자 한다면 그것을 존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3) 純粹持株會社와 일반집중

이제 일반집중이 억제되어야 할 현상이라는 전제하에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자. 그렇다면 다음에는 순수지주회사를 허용하면 과연 일반집중이 심화되는 것인가를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이 문제도 역시 실증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와 관련해서 간과해서는 아니될 것은 현재 사업지주회사가 독금법상 허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업지주회사마저도 금지되었다면 다소나마 일반집중의 진전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사업지주회사형태를 이용한 사업경영이 가능한 상황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순수지주회사를 허용한다고 해서 얼마나 일반집중이 심화될 것인가는 의문이다.

현재 자회사의 설립을 원하는 기업이 순수지주회사규제 때문에 자회사를 둘 수 없는 경우에 취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3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 기존의 다른 사업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사업지주회사로서 자회사를 둘 수 있다. 물론 다른 사업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둘째, 새로 설립한 회사의 주식을 다른 계열회사들과 나누어 가짐으로써 실질적으로 자회사와 마찬가지로 지배할 수 있다.⁽²⁴⁾ 현재에는 이 방법이 많이 이용되는 것 같다. 그러나 이 방법은 그룹의 주식소유구조를 쓸데없이 복잡하게 한다는 단점이 있다. 셋째, 자회사형태를 취하지 않고 사업부문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물론 사업부문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소요자금의 전부를 회사가 준비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부담은 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전부를 소유하는, 이른바 100% 子會社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발생한다. 이처럼 현재의 규제는 대기업이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는 것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형태를 이용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형태는 버려두고 순수지주회사형태만을 막아야 할 필요성은 인정하기 어렵다. 순수지주회사가 허용된다면 대기업이 자회사를 두는 것이 보다 용이해질 것이다. 일부에서는 일반집중이 심화될지도 모른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대기업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사실 자체가 우려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23) 예컨대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가 대표적이다.

(24) 이 방법은 물론 독금법상의 출자총액제한규정(10조)의 테두리내에서만 취할 수 있다.

순수지주회사의 규제근거가 일반집중때문이라면 일반집중과 관계없는 경우에는 그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그러한 예외를 정하고 있지 않다. 즉 소규모기업이라도 순수지주회사는 금지되는 반면에 대규모기업이라도 사업지주회사는 허용되는 것이다. 이는 명백히 불합리하다. 따라서 순수지주회사규제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소규모회사의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

(4) 순수지주회사의 효용

통산성보고서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순수지주회사가 줄 수 있는 효용은 상당 부분 현재 사업부문을 이용하는 등의 다른 방법으로도 달성이 가능하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순수지주회사를 금지해야 한다는 결론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통산성보고서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어떠한 구조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기업측의 선택에 맡겨야 할 것이다. 또한 순수지주회사의 효용이 반드시 통산성보고서에 열거된 것에 한정되는 것도 아니다. 일단 경제계에서 순수지주회사형태를 이용하다 보면 전에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효용을 발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5) 小括 : 일반집중과 융통성있는 기업구조

현재의 규제를 해금하자는 것에 대한 일반의 우려는 명확한 과학적인 근거를 갖는 것이기보다는 다분히 심리적인 불안에 근거한 것이다. 현재 이 규제가 있는 상황하에서도 일반집중이 진전되고 있는데 갑자기 폐지함으로써 사태가 악화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규제해금론에 대한 반대의 이면에는 바로 이러한 의구심이 깔려 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순수지주회사를 허용한다고 해도 일반집중을 촉진시키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그에 비하여 소유구조의 투명성확보, 업종의 특성을 살린 고용방식의 채택, 새로운 사업분야로의 진입과 퇴출의 용이성이라는 점에서는 순수지주회사의 순기능이 역기능보다 큰 것이 아닐까?

IV. 관련법률상의 검토

1. 총설

지주회사형태는 독금법뿐이 아니라 상법, 증권거래법, 세법 등의 관련법률상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발생시킨다. 통산성보고서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문제들은 반드시 純粹持株會社에 고유한 문제라기 보다는 사업지주회사에도 공통된 문제들이다. 따라서 이들 문제가 純粹持株會社에 관한 독금법상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막는 절대적인 장애물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純粹持株會社가 자유화되는 경우에는 그 문제들이 보다 심각하게 대두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따라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곳에서는 이들 문제점을 간단히 언급하기로 한다.

2. 상법상의 문제점

(1) 純粹持株會社에서의 株主의 지위

純粹持株會社의 주주들은 기업경영에 대한 통제력을 대부분 상실하게 된다. 통상의 회사에서도 주식소유의 분산으로 주주들이 영향력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그러나 지주회사 구조에서는 이들 주주의 영향력은 한층 더 얽어진다. 회사가 각사업부문을 分社化하여 純粹持株會社가 되는 경우에는 실제의 사업활동은 자회사가 담당하고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지배, 관리만을 담당하게 된다. 이러한 기업에서 중요한 결정은 자회사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예컨대 자회사가 합병이나 영업양도등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경우 자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주주는 지주회사의 주주가 아닌 지주회사 자체이다. 결국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주회사의 이사일 것이다. 그 결과 지주회사의 소수주주들은 실제로 사업상의 중요한 결정에서 완전히 소외될 것이다. 이 문제는 물론 純粹持株會社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현재 허용되고 있는 사업지주회사에도 발생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그 심각성이 純粹持株會社에서 훨씬 두드러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²⁵⁾ 사업지주회사에서는 그래도 주주의 주된 수입원은 지주회사의 사업활동이기 때문에 그 이사를 통제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다. 그러나 純粹持株會社에서 중요한 것은 전적으로 자회사의 사업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자회사의 이사는 지주회사의 주주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지주회사의 주주는 자회사의 이사를 선임하거나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영업양도와 사실상 차이가 없는 자회사주식양도의 경우에 관여할 수도 없다. 통산성보고서는 純粹持株會社에 투자하는 사람은 그점을 각오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주주의 보호는 사업회사가 純粹持株會社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주주의 특별결의를 요구함으로써 달성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²⁶⁾ 그러나 주주의 동의에 그토록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는 의문이 있다. 일단 지주회사가 되고 말면 주주는 사업회사의 활동을 통제할 지위를 영구적으로 상실한다. 주주가 그러한 결과가 자신의 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2) 子會社의 채권자의 보호

지주회사가 그룹을 특정의 자회사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자회사의 외부 주주뿐 아니라 채권자의 지위도 위태롭게 된다. 자회사가 지급불능에 빠진 경우에 채권자가 지주회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이 문제는 사업지주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비교적 잘 알려진 문제이므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25) 座談會, “純粹持株會社의 規制緩和을めぐ는 諸問題” 商事法務 1388호(1995) 22면(森本發言).

(26) 통산성, 주(11), 50-51면. 반대하는 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퇴출할 수 있을 것이다.

(3) 子會社の 소수주주의 보호

純粹持株會社の 자회사가 상장된 경우에는 자회사에도 소수주주가 존재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이들과 지주회사와의 이익상반이 문제된다. 그러나 이 문제 또한 사업지주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서 역시 거듭 연구된 문제이므로 더 이상 논하지 않는다.

(4) 기타의 문제

가. 純粹持株會社와 정관의 사업목적

순수지주회사는 직접으로는 아무런 사업활동도 영위하지 않고 자회사를 통해서만 사업활동을 영위한다. 따라서 순수지주회사의 정관에 사업목적은 어떻게 기재할 것인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 만약에 사업목적으로 他社의 주식을 소유지배함으로써 이익을 추구한다는 식으로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면 편리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法務省의 지도에 의하면 순수지주회사가 신규사업에 진출할 때에 자회사의 영업을 純粹持株會社の 영업으로서 정관에 기재하여야한다.⁽²⁷⁾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주주의 이익이 두텁게 보호될 것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신규사업진출시마다 정관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실무상으로는 크게 불편하다. 또한 이처럼 정관의 사업목적에 의하여 주주를 보호하려는 시도는 이미 그 母國이라고 할 수 있는 英美에서는 포기되었다. 영미에서는 정관목적을 數페이지에 걸쳐서 상세하게 기재함으로써 이른바 能力外理論이 의의가 상실되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정관을 위와 같이 포괄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허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나. 회사분할

사업회사가 각사업부문을 분사화해서 순수지주회사로 하는 경우 회사를 분할하는 것이 되지만 현행상법상 회사의 분할에 관한 규정은 없다. 현행상법상 다음과 같은 대안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 사업부문의 현물출자로서 회사설립
- 신회사설립하여 현물출자(유상증자)
- 신회사설립시에 분할하는 사업부문을 재산인수(영업양도)
- 사후설립의 형태로 양도(영업양도)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는 친회사의 準備金, 충당금 등을 子會社에 계승시킬 수 없기 때문에 따로 회사분할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²⁸⁾

3. 증권거래법상의 문제

순수지주회사의 경우에는 특히 연결재무제표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제 우리 나라

(27) 통산성, 주(11), 53면.

(28) 이 문제에 대한 최근의 문헌으로는 신찬수 외, 회사분할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1995) 참조.

에서도 1992년부터 연결재무제표의 이용이 강제되고 있다. 순수지주회사에서는 지주회사 전체차원에서 작성된 재무제표만을 보아서는 각사업부문인 자회사의 활동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 결국 개개 자회사의 활동은 각사업부문별 정보인 세그먼트정보를 보아야 알 수 있다. 그러나 기업측으로는 이러한 세그먼트정보를 공시하는 것은 비용도 부담스럽지만 기업비밀과 관련되기 때문에 전혀 달가운 일이 아니다.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매출액과 매출원가는 업종별로 구분하여 기재할 수 있다”(45조). 단지 “기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강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위에서 말한 기업의 부담과 비밀보호의 필요를 고려하면 이해가 가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회사의 이해관계자로서는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²⁹⁾

4. 세법상의 문제

순수지주회사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세법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이용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1) 지주회사설립시의 법인세

持株會社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기존의 사업회사의 상층에 지주회사를 새로 설립하여 기존의 회사들을 그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것은 어렵다. 그 경우에는 먼저 지주회사가 될 회사를 설립하여 그 지주회사로 하여금 사업회사의 주주들을 상대로 公開買受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주회사가 공개매수의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어렵고 공개매수를 성공시키는 것도 어렵다. 따라서 실제로 지주회사의 설립형태로 가능한 것은 기존의 사업회사가 특정한 사업부문을 分社化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사업회사가 기존의 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자회사에 그것을 영업양도하는 방법을 취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등 현행법상으로는 과세부담의 문제가 있다.⁽³⁰⁾

(2) 지주회사설립후의 법인세

純粹持株會社의 익금은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이고 지급하는 것은 일부의 임금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배당이다. 따라서 배당을 과세상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중요하다. 우리 세법상 수취한 배당은 익금에 산입되는 것이 원칙이다.⁽³¹⁾ 반면에 지급배당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따라서 二重課稅의 문제가 생겨난다. 또한 자회사들중 일부는 이익이 나고 일부는 결손이 날 수도 있다. 그러한 경우 이익과 결손이 상쇄되지 않으므로 이익이 난 회사는 법인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처럼 회사를 순수지주회사로 나눔으로써 과세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지주회사의 이용이 저해될 것이다. 그러나 현행 세법은 독립기업을 전제로 구성

(29) 증권관리위원회는 1993년부터 사업보고서 등에 세그먼트정보의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30) 이점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신찬수 외, 주(28), 85-86면.

(31) 다만 기관투자자의 경우에는 수취배당의 20%만이 익금에 산입된다(법인세법 15조 1항 10호).

되어있으므로 처리가 어렵다. 만약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된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그러나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V. 결론에 갈음하여

위에서 소개한 논의는 대체로 우리 나라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순수지주회사를 금지할 논거가 박약하므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통산성보고서의 결론에는 경청할 점이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와는 다른 관점에서 순수지주회사의 해금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여겨진다.

현재 우리나라 재벌의 소유구조는 극히 복잡하다. 만약 재벌이 순수지주회사의 구조를 취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로 바람직하지 않을까? 현재의 복잡한 소유구조하에서는 이익충돌의 가능성이 몹시 높을 뿐 아니라 그러한 거래를 파악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재벌로 하여금 순수지주회사형태를 취하도록 하고 나아가 지주회사로 하여금 가급적 자회사 주식 전부를 소유하도록 유도하는 경우에는 이익충돌의 여지도 크게 줄어들고 각기업의 경영사정을 파악하기가 쉬워질 것이다. 순수지주회사형태로 기존의 계열회사를 모두 포괄하기 위하여는 방대한 규모의 자금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다면 기존의 사업중에서 특별한 우위를 갖지 못한 사업부터 포기하게 될 것이고 새로운 사업분야로 진출하는 것이 보다 신중해질 것이다. 물론 기존의 재벌을 순수지주회사의 형태로 전환시키는 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 부수적인 문제도 많이 발생할 것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